
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7. 12.(월) 배포</p>			
보도일	<p><b>2021. 7. 13.(화) 국무회의 시작 시(08:30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/b>  <b>인터넷·방송·통신 7. 13.(화) 국무회의 시작 시(08:30)부터 보도 가능</b></p>				
담당과	교육과정정책과	담당자	과 장 신진수 (☎ 044-203-6433)	교육연구관 최영선 (☎ 044-203-7029)	교육연구사 박윤수 (☎ 044-203-7033)

## 「교육과정심의회 규정」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- 국가교육과정, 학생·지역사회 전문가 참여 확대 -

- ◆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에 학생과 지역 전문가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◆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논의 활성화 기대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7월 13일(화)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「교육과정심의회 규정」 일부개정안을 심의·의결하였다고 밝혔다.
  -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, 인구감소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초·중등학교 내실화를 지원하고 혁신적인 개정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‘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’(이하 추진계획)을 발표(2021.4.20.)한 바 있다.
  - 아울러, 이번 「교육과정심의회 규정」 일부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추진 계획의 주요 과제였던 초·중등교육과정의 제·개정 시에 교육 수요자인 학생·지역 인사 등의 의견 개진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되었다.

- 또한, 「교육과정심의회」의 주요 역할인 초·중등교육과정의 제·개정 사항 심의, 조사·연구와 자문 외에,
  - 학생, 지역사회 전문가 등도 교육과정심의회에 ‘참여위원회’ 형태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차기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을 보다 공고하게 확보하고자 한다.
- 「교육과정심의회 규정」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- ① 교육과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조사 연구기능뿐만 아니라 학생과 지역사회 전문가의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한다.
  - ② 이를 위해, 학생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된 참여위원회를 신설한다.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학생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하여 학생의 삶과 학습을 보다 밀접하게 연계하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.”라고 밝혔다.

- 【붙임】 1. 「교육과정심의회 규정」 일부개정안  
 2. 「교육과정심의회 규정」 일부개정안 신·구조문대비표



대통령령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###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

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제2호에 따른”으로,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에 따른”으로, “이에 관한 조사·연구를 하게 하기”를 “그에 필요한 조사·연구 및 학생 등의 의견 수렴을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학교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”를 “학교별위원회, 운영위원회 및 참여위원회”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참여위원회) ① 참여위원회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한다.

② 참여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”를 “소위원회, 운영위원회 및 참여위원회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”으로, “사람”을 “사람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”으로 하고, 같

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”를 “제1항에 따른 각 소위원회, 운영위원회 및 참여위원회”로 한다.

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6조”를 “제6조제1항”으로, “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”를 “소위원회, 운영위원회 및 참여위원회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교과별 소위원회와 각 학교별 소위원회”를 “소위원회 및 참여위원회”로, “1인”을 각각 “1명”으로, “두되”를 “두며”로, “소위원회에서”를 “소위원회 및 참여위원회별로 위원 중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소위원회”를 “소위원회 및 참여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”를 각각 “소위원회, 운영위원회 및 참여위원회”로,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두되”를 “두며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운영위원회와 각 소위원회”를 “각 소위원회, 운영위원회 및 참여위원회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붙임2 「교육과정심의회 규정」 일부개정안 신·구조문대비표**

**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설치)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과정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, 이에 관한 조사·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과정심의회를 둔다.	제1조(설치) ----- 제2조제2호에 따른 ----- 제2조에 따른 ----- ----- 그에 필요한 조사·연구 및 학생 등의 의견 수렴을 -----.
제2조(심의회 조직) 교육과정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는 교과별위원회, 학교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조직한다.	제2조(심의회 조직) ----- ----- 학교별위원회, 운영위원회 및 <b>참여위원회</b> -----.
<신 설>	제5조의2(참여위원회) ① 참여위원회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한다. ② 참여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위원) ①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원, 교육전문가, 교육행정가, 당해 교과 및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, 사회 각계 인사 및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.	제6조(위원) ①-- 소위원회, 운영위원회 및 참여위원회----- ----- 해당 ----- ----- --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----- ----- 사람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-----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	② 제1항에 따른 각 소위원회, 운영위원회 및 참여위원회----- 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의2(위원의 해촉) 교육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	제6조의2(위원의 해촉) ----- --- 제6조제1항--- 소위원회, 운영위원회 및 참여위원회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위원장 등) ① 각 <u>교과별 소위원회</u>와 각 <u>학교별 소위원회</u>에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 및 총무 1인을 두되, 각 <u>소위원회</u>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④ 각 <u>소위원회</u>의 총무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.</p> <p>⑤ 각 <u>소위원회</u> 및 <u>운영위원회</u>에 각 <u>소위원회</u> 및 <u>운영위원회</u>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.</p> <p>제8조(의결정족수) <u>운영위원회</u>와 각 <u>소위원회</u>는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.</p>	<p>제7조(위원장 등) ①-- <u>소위원회</u> 및 <u>참여위원회</u>----- ----- 1명----- 1명 -- --- 1명-- 두며---- <u>소위원회</u> 및 <u>참여위원회</u>별로 위원 중에서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-- <u>소위원회</u> 및 <u>참여위원회</u>----- -----.</p> <p>⑤-- <u>소위원회</u>, <u>운영위원회</u> 및 <u>참여위원회</u>----- -- <u>소위원회</u>, <u>운영위원회</u> 및 <u>참여위원회</u>----- 1명 -- 두며----- -----.</p> <p>제8조(의결정족수) 각 <u>소위원회</u>, <u>운영위원회</u> 및 <u>참여위원회</u>---- ----- ----- -----.</p>